

2013-12 책임연구보고서

물지마범죄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묻지마범죄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연구관 강 소 영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고찰	4
제1절 묻지마범죄의 의의	4
1. 묻지마범죄의 용례	4
2. 묻지마범죄의 적용과 비교	7
제2절 묻지마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18
1. 누적된 긴장 모델	18
2. 공격성 이론의 접근	25
3. 충동장애에 기인한 범죄행동	27
제3장 묻지마범죄의 현상과 특성	30
제1절 묻지마범죄의 대표적 사례	30
1. 국내의 묻지마범죄 사례	30
2. 국외의 묻지마범죄 사례	39
제2절 묻지마범죄의 개념요소	43
1. 피해자의 선택	44
2. 범죄피해의 현장성	46

3. 범행의 비전형성	47
4. 분노표출에 의한 동기	50
제4장 정책적 제언	55
제1절.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화	55
1. 묻지마범죄의 개념요소 및 범위	55
2. 묻지마범죄의 데이터 구축 및 분석	58
제2절 묻지마범죄에 대한 대응	60
1. 범죄경력자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60
2.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62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6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묻지마범죄는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어진다
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키면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묻지마범죄는 최근에 들어 발생한 신종범죄유형은
아니며, 비단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에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특징의 유형의 범죄로 ‘도
리마(通り魔, 거리의 악마)사건’이 알려져 왔으며, 이미 ‘도리마 범죄’라
는 용어가 정의된 지 오래이다. 뿐만 아니라 총기사용이 허용되는 미국
의 경우 대량살인이나 증오범죄의 형태와 유사하게 발생한 묻지마범죄
형태의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최근까지 알려진 묻지마범죄는 수법이 잔인하거나 엽기적인 것으로 묘
사되고 있으나, 실제 다수의 강력범죄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개적인 장소 즉, 노상에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및 목격자
로 하여금 범행의 잔인성을 극도로 체감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는
공개적으로 노출된 범행 자체를 현장에서 목격한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
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인식하여 공포심이 더해 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매체와 다양한 경로로 범행현장에 대한 정보가 일
반시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는 등 묻지마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
짐에 따라 형사정책적 접근이 시급하고, 무엇보다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지마범죄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전무하며, 범죄발생 실태 및 집계는 물론 이를 통한 범죄대책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들이 지금까지 문지마범죄에 대하여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에서 무동기범죄 또는 이상동기 범죄로 사용하거나, 이러한 범죄 유형이 갖는 공통요소로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 행위의 특이성에 따라 무차별 범죄 또는 증오범죄, 보다 최근에 와서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표출에 의한 범죄로 좌절범죄 또는 절망범죄 등 다양한 기준과 용어로 혼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지마범죄로 인식되는 다수의 사례들은 실제 동기에 의한 계획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특정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지금까지 인식한 용어와 개념 그리고 범위들과 다른 측면들이 드러나면서 더더욱 문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형사사법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문지마범죄 자체를 정의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더 이전에는 문지마범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지마범죄에 대한 대책에 앞서 개념정의를 위한 기초연구로 문지마범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례들을 통해 개념요소를 발견하고, 이들 요소를 통해 향후 범죄통계 수집 등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제2절 연구내용

이 연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묻지마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전무하며, 범죄발생 실태 및 집계는 물론 이를 통한 범죄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묻지마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개념정의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범죄통계의 기초자료의 근거 및 범죄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강력범죄(우발적 범죄 포함), 연쇄범죄(대량살인 포함) 그리고 기타 무차별적 공격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묻지마범죄’로 알려진 사건들을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묻지마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에 대하여 이견이 많지 않거나, 묻지마범죄로 잘 알려진 사건들을 선별하였다.

그 이유는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전달되거나 선행연구들에서 묻지마범죄로 명명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었던 대표적인 사례들을 통해 공통의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묻지마범죄의 행위가 비전형적이라는 특성상 지금까지 개별사례들로 접근해 왔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견해에 따라 사례를 추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지금까지 혼용하여 사용되는 무동기, 증오, 무차별범죄 등의 용어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묻지마범죄의 정의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통된 특성들을 고찰하면서 이를 통해 향후 묻지마범죄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문지마범죄의 의의

1. 문지마범죄의 용례

우리사회에 알려진 소위 ‘문지마범죄’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며,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개념이나 범위가 규정되거나 합의된 바는 없다. 학자들 간에도 무동기범죄, 이상동기범죄, 불특정 다수 대상의 범죄 등 각 발생한 범죄사례에 맞추어 사용해 오면서도 여전히 이에 대한 학술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까지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엽기적인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객관적 분석이나 개념정립 없이 문지마범죄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조차도 용어의 합의 없이 연구과정상 문지마범죄로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며, 이에 대한 유래와 용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지마범죄 용어의 사용은 1999년 ‘문지마 다쳐’라는 휴대폰 광고 시리즈의 카피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후 ‘문지마’라는 용어가 유행어로 알려지면서 당시 ‘도·감청 의혹사건’, IMF구제 금융 당시 정확한 정

보나 체계적인 시장분석 없이 주식에 마구 투자하는 일에 대하여 ‘묻지마 투자’, 이 외에도 ‘묻지마 관광’, ‘묻지마 범죄’ 등 90년 대 말 이후의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사회상을 반영·풍자하는 등 대중적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와 관련하여 사전상의 의미는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하며, 가장 유사하게는 일본의 ‘도리마(通り魔)사건’으로 알려져 있다.¹⁾

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정의한 개념은 없으나, 경찰청은 주요 강력범죄 등에 있어 개별사례로 접근해왔다. 경찰청은 주로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는 사건이나 우발적 범죄 또는 범행당시 정신상태와 관련하여 통계상 집계하거나, 최근에 와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상동기 범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묻지마범죄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공문 상에, ①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행해지는 범죄행위를 의미하고, ②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적 상관성이 없거나 미약하고, ③ 알코올, 약물, 게임중독 등이 정신적 문제, 폭력성향이 있는 상태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²⁾ 그러나 2013년 묻지마범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 대상을 2012년 1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발생한 55건에 대하여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밝힌 것에 그쳤다.

1)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2) 대검찰청 형사1과-3602(2012. 02. 28),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 지시’; 김현철,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 연”, 형사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9호, 2012, 282면.

한편, 학자들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범죄형태가 등장했던 초기에는 동기가 불분명해 보이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로 사용하였고(홍성렬, 2006; 염건령, 2006, 2010; 김상균, 2006, 임재식, 2007; 강덕지, 2010; 김진혁, 2012), 이 들 중 동기가 없는 범죄는 없으나 공통적인 요소는 피해자를 선택하는 임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박순진(2004)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Stranger Violence against Multiple Victims)’로 표현하였다. 또한, 김진혁(2010)과 조철옥(2010)은 분노표출에 대한 범죄로 미국의 증오범죄와는 차이가 뚜렷한 ‘한국형 증오범죄(Hate Crime)’로 표현하였다. 다만, 이정주(2013)는 다문화사회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의 일부로 묻지마범죄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편, 박형민(2012)은 ‘무차별 범죄(Random Crime)’, 서울지방경찰청(2010) 및 고선영(2012)은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하면서 개념화에 대한 시도를 보였다. 보다 최근에 와서는 개념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논의들이 활발해 지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과거 연구들의 혼용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김현철, 2013; 정연대·이운호, 2013; 윤정숙·김민지, 2013) 범죄행태를 심리적 접근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와서 묻지마범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불만이나 좌절, 스트레스 또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증오심과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로 인식되면서³⁾ 정책토론회 등에서 ‘절망범죄’ 또는 ‘좌절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⁴⁾ 그러나 여전히 언론이나 매체들은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범죄에 대하여 이미지화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묻지마범죄를 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공식적인

3) 김준호, “묻지마 범죄 대책 길게 보자, Weekly 공감, 2013.

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 정책토크,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2012.

합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 및 범죄자 관리를 위한 개념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2. 묻지마범죄의 적용과 비교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에는 범죄학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발생의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적 접근이나 사례분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묻지마범죄로 표현되는 무동기,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 등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용어의 적용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가. 무차별 폭력(Random Violence)

묻지마범죄에 대하여 박형민(2012)은 ‘무차별 폭력(Random Violence)의 개념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무차별 폭력은 우리사회의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범죄를 저지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유형으로

보았다. 무차별 폭력의 의미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공격대상을 무차별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로 지칭하였다⁵⁾.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범죄학자 Best(1997)에 따르면, 범죄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증식시켜 사회 불안울 조성하며, 무차별적 폭력과 같은 범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은 증가되었다고 밝혔다.⁶⁾ Bests(1997)는 이러한 범죄를 'random violence'라고 칭하고, 이에 대한 사회 및 언론의 반응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였다. 즉 무차별 폭력은 겉으로 보기에 특정한 동기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로 해석하였으며 다음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범행의 목적 및 동기가 없고(pointless),

둘째, 일정한 형태가 없으며(patternless),

셋째, 흉악한(deterioration) 범죄 행위가 특징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무차별 폭력의 범행 대상은 여성일 수도 있고, 어린 아이, 동성애자, 버스 운전기사, 거리는 지나는 행인 등 그 대상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둘째, 이러한 범행의 동기는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인 범죄가 아니라, 목적이 불분명하고 동기를 쉽게 찾

5) 박형민,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 추계 세미나 발표자료, 2012, 48면.

6) Joel Best. (1999).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8-10.

을 수 없는 표출적인 범죄이다. 셋째, 경제적인 빈부격차나 비도덕적인 성향으로 인해 더욱 흉악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Best(1997)는 점차 증가하는 ‘무차별 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도 마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무차별 폭력’을 말 그대로 무차별적인 범죄로 치부한다면 사회적인 무책임성과 불안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용어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범죄자, 형사정책을 이해하는 관점 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용어의 생성 원인, 과정, 효과 등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박형민(2012)의 연구는 무차별 범죄의 특성을 비경제적·정서적 동기, 좌절을 경험한 가해자, 피해자 선택의 임의성, 피해 범위의 무제한성, 범행의 계획성 그리고 정신질환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 피해자 선택의 임의성은 박순진(2004)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즉, ‘가해자와 특별한 관계를 갖지 못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 공격대상이 되는 사람(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경우’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증오범죄(Hate Crime)

증오범죄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대하여 증오, 적개심, 편견 혹은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곳에 소속되었다고 여겨진 피해자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즉, 증오범죄는 인종차별의 범죄, 성범죄, 동성

에 혐오, 반유대주의 그리고 파벌주의를 포함하고 민족 말살 및 집단 학살과 관련이 있다. 미국에서 공공의 문제로 여겨진 증오범죄는 반-인종주의, 게이와 레즈비언의 인권, 여성 인권과 장애인 인권단체 운동들의 결과로 발생되었다.⁷⁾

또한, Levin과 McDevitt(1994)는 스틸 추구, ‘아웃사이더’ 혹은 ‘타인’의 두드러진 존재에 대한 반응 혹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부여로 인해 증오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⁸⁾ 이에 대한 개념은 「증오범죄법(Hate Crime Act)」에서는 ‘실제 혹은 인식된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적 지향, 성적체성 또는 장애로 인해 총기, 위험한 무기, 폭발물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야기하거나 시도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례들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혐오나 분노를 이유로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지마범죄를 한국형 증오범죄 형태로 접근하는 연구들에서는 김진혁(2012)과 조철욱(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한국형 증오범죄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범죄로 가해자가 사회에 대한 주관적 분노에 기인하여 사람에 대한 공격을 주된 요소로 삼는 폭력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형 증오범죄의 특성은 전통적인 증오범죄가 갖는 신념형이거나 복수형과 다르게, 무연관형을 대표하고,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잔인성을 드러내며, 피해의 대량성, 피해자 선정의 무차별성, 범죄의 지속성, 지속적인 모방, 피해에 대한 보복 등으로 특성화하였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 문지마범죄로 불리는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하

7)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EDT),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6.

8) Hamm, M. S., American Skinheads: The Criminology and Control of Hate Crime. New York, Praeger Press, 1993.

면 ‘증오심’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증오범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를 배제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과 달리, 증오에 기인한 한국의 사례들은 ‘나를 인정해 달라’와 같은 요구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주로 표출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를 향한 증오가 범죄로 표출된다는 것이다.⁹⁾

한편, 묻지마범죄를 증오범죄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정주(2013)는 미국의 증오범죄와 한국의 사례들은 기존의 연구자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¹⁰⁾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의 편향된 시각, 사회에 대한 불만, 보복심리의 확장으로 인한 무차별적 공격이나 범죄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성은 묻지마범죄의 특성을 유형화 했다가 보다는 특정범죄들이 증오나 편견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범죄들 안에 묻지마범죄가 일부 포함된다는 점을 구별할 수 있었다.

다.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 이상동기 범죄

특정동기가 없는 범죄는 비이성적이며, 오직 가해자만 그 범죄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범죄의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게 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자의 주변 환경 및 배경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하며, 미국에서의 사례들은 아래와 같은 특성으로 유형화하고 있다.¹¹⁾

9) 박순진, 앞의 논문, 223면.

10)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한양법학 제24권 제2집, 2013.

11) John E. Douglas, Ann W. Burgess, Allen G. Burgess, & Robert K. Ressler. Crime Classification Manual(2th). Jossey-bass, 2006, pp. 182-187.

- ◇ 피해자: 이러한 범죄 유형의 피해자는 범죄자와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무고한 시민 혹은 이웃이라는 점이다. 그 피해자는 남성, 여성, 성인, 혹은 어린아이 등 다양하다.
- ◇ 범죄현장: 이러한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범죄자 또한 경찰에게 검거당하기 쉽다. 또한 피해자를 숨기려는 의지가 없는 등 비조직적이다. 범죄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수의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행 도구로는 주로 총을 선택한다.
- ◇ 일반적인 수사: 이러한 범죄의 증거는 범죄 현장에 대부분 남아 있다. 즉 탄피나, 버려진 무기 등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은 대부분 현장에서 발견된다. 범죄자의 주요 목적인 대량 학살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총기류를 사용한다. 그리고 머리, 목, 가슴 등 목숨에 치명적인 부분만을 노려 사격한다.

국내 연구들에서도 위와 같은 특성들로 요약되는 무동기범죄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강덕지(2006)는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범죄자와 피해자 간에 특정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범죄’라고 하였고,¹²⁾ 최규범(2006)은 ‘원한, 이성관계, 금품 등 특정한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로,¹³⁾

12) 강덕지, “무동기범죄 심층해부”, 수사연구 4월호, 2006.

13) 최규범, “국내 사건사례를 통해 보는 무동기범죄의 분석과 수사”, 수사연구 제24권, 2010.

이성식(2010)은 ‘불특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있지 않는 사이이며, 아무 상호작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정의하였다.¹⁴⁾

이러한 정의에 따라 특징을 정리한 김상균(2012)의 연구에서는 무동기범죄가 대체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인에 대하여 난폭하게 표출하는 ‘화풀이형’,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대인관계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외톨이나 은둔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외톨이형’의 양상을 띤다고 언급했다.¹⁵⁾ 특히, 이성식(2010)의 연구는 아무 이유와 동기가 없는 범죄가 아니고 대부분의 범죄와 같이 동기가 있지만, 그것을 규정 짓기 어려운 범죄라고 정의한 바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무동기’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기 보다는 보다는 몇몇의 사례를 통해 범행당시 범죄자의 상황이나 동기가 불명확하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들은 무동기로 여겨지는 범죄들이 사실은 범행동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여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동기의 이상성을 중심으로 묻지마범죄를 다룬 연구는 서울지방경찰청(2012)과 고선영(2012)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상동기 범죄를 불명확한 범행동기를 지닌 범죄와 불특정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명확한 동기란, 범인의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동기이거나 범인의 억압된 욕구의 표출 등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둘째, 불특정한 피해자의 선택에 있어 상황적 또는 우발적으로 선택된 피해자들 중 범죄자가 선호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의해 계획적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

14) 이성식,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2010.

15)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 95-96면.

16) 이성식, 위의 논문, 23명.

이 없고, 범죄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피해자가 선택될 경우로 정의된다.¹⁷⁾

그러나 분노표출을 목적으로 하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는 물질적 이득이나 성적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 비해 명확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지마범죄로 볼 수는 있다.¹⁸⁾ 그러나 구체적인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동기가 없거나, 이상동기로 단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상동기라 하는 점을 심리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동기의 경우이거나 범죄자의 억압된 욕구의 표출로 단정하는 것은 동기의 이상성을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동기를 이상동기로 보는 경우 정신병질의 질환이 있는 일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확대해석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선택 문제에 있어 범죄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보다는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관계여부를 불문하고 우발적 상황에 놓인 현장의 무고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즉, 피해자의 불특정성은 대상의 불특정성 보다는 범죄현장의 불특정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7)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2012, 6면.

18) 윤정숙·김민지, 앞의 논문, 153면.

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 (Stranger Violence against Multiple Victim)

묻지마범죄를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불특정한 다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불특정인과 다수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피해자를 말하는데, 주로 연쇄범죄, 연속범죄, 대량범죄 등이 포함되며, 이 외에 묻지마범죄와 관련해서는 증오범죄나 우발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연쇄살인(serial murder)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냉각기라는 시간간격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연속살인과 구별된다. 연속살인(spree murder)은 짧은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두 명 이상의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국(BJS)은 연속 살인을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는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¹⁹⁾ 또한, 대량살인(mass murder)은 살인과 살인 사이에 냉각기 없이 한 곳에서 최소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²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죄로 설명하기 쉬운 용어는 대량살인이다. 대량살인(mass murder)은 연쇄살인과는 상반된 개념으로 한 사건에서 한명 또는 몇 명의 가해자에게 4명 이상이 살해당하는 것을 말

19) Charalambous, Nick, and Meryl Dillman. "No evidence of spree killer yet, police say". The Anderson Independent-Mail (Anderson, South Carolina), December 17, 2006. Accessed July 8, 2008; <http://www.independentmail.com/news/2006/dec/17/no-evidence-spre-killer-yet-police-say/>

20) Bartol Curt R. & Bartl Anne M., Criminal Behavior(9th, Hardcover) A Psychosocial Approach, Prentice Hall, 2010, pp. 301-302.

한다. 대량살인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명 또는 수명의 가해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전쟁, 큰 규모의 정치적 테러, 범죄 집단에 의한 살인 등은 대량살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량살인은 단 한 번의 통제 할 수 없는 감정 폭발에 의한 살인이므로 '동시살인(simultaneous killing)'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폭스(Fox)와 레빈(Levin)은 대량살인범을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분류했다.²¹⁾

- ① 복수형 살인자(revenge killer)는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증오와 그에 대한 응징을 목적으로 한다. 전형적인 공격 대상은 관계가 떨어진 아내, 아이, 고용주, 피고용인이다.
- ② 사랑형 살인자(love killers)는 헌신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한다. 그들은 주로 자살을 택할 만큼 소심한자로 주로 아내나 아이를 주로 살해한다.
- ③ 이익형 살인자(profit killers)는 보통 범죄를 은폐하고, 목격자를 제거하고, 범죄 음모를 실행하기 위해 살해한다.
- ④ 테러형 살인자(terrorist killers)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갱 집단살인은 상대 적수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종교 숭배 살인자는 실제로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음을 사회에 알리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21) James Alan Fox and Jack Levin., "Mass Muder: An Analysis of Extreme Viol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5, 2003, pp. 47-64.

이들 개념이 묻지마범죄와 중복되는 부분은 다수를 향한 범죄라는 점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특정인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특정인이라는 명확한 구분은 지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범위로 해석할 경우 다수범죄 내에 묻지마범죄가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우발범죄는 분노의 감정과 폭발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폭언으로 화가 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상대를 우연한 기회에 살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발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다툼이나 상대방의 촉발적 요인을 전제하는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²²⁾ 따라서 증오범죄나 우발범죄도 마찬가지로 특정인에 대한 배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증오나 우발적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불특정인 대상 범죄로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묻지마범죄가 다수인을 향한 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적어도 분노의 대상이 특정인을 포함한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점에서 연쇄살인, 대량살인 등과도 구별된다.

제2절 묻지마범죄에 대한 이론적 접근

범죄학에서 묻지마범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더욱이 한국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개별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범죄학 이론을 통해서

22) 이성식, 앞의 논문, 22면.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문지마범죄를 설명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하다.

물론 문지마범죄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박형민(2012), 윤정숙·김민지(2013) 등은 강력범죄나 우발 또는 현실불만 등의 동기로 집계된 범죄통계를 추정하여 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범죄들에 대하여 범죄학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 하위문화이론, 사회구조이론의 접근²³⁾ 등을 통하여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이 문지마범죄라고 정의된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아닌, 관련성이 깊은 범죄에 대한 추정에 불과하므로 명확하게 이론을 통한 해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죄학의 이론적 검토 보다는 범죄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문지마범죄에 대한 전형적인 요소를 도출해 나가는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전형적인 요소들을 검토하는데 앞서, 국외연구들이 접근한 방법과 결과들을 통하여 국내의 문지마범죄에 대한 특성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의 연구들에서 누적된 사례들을 통하여 공통된 원인으로 주목하는 긴장과 스트레스, 공격성과 분노 등에 대한 이론적 모델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누적된 긴장 모델(Cumulative Strain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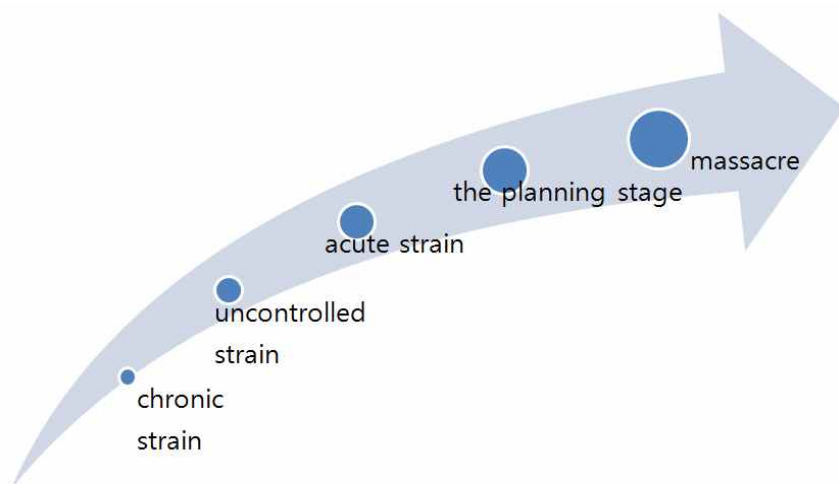
문지마범죄의 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연구로 Jack & Eric(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²⁴⁾ 이들의 연구는 미국 학교 내에서

23) 이성식, 앞의 논문, 26-29면 참조.

24) Jack Levin and Eric Madfis, Mass Murder at School and Cumulative Strain,

발생하는 무차별적 총격 사건들을 중심으로 범죄학적 이론들로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학교 내 총격사건들을 범죄학적 이론 중 긴장 이론(strain theory), 통제 이론(control theory),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을 적용한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누적효과를 총 5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누적된 긴장의 5단계 모델(cumulative strain)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범죄자가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 때부터 경험한 긴장(지속적인 긴장-chronic strain)이 친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저해되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통제할 수 없는 긴장-uncontrolled strain). 이러한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실패하거나 심리적인 충격(극심한 긴장-acute strain)을 경험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무차별적인 총격으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누적된 긴장의 5단계 모델

가. 지속적인 긴장(chronic strain)²⁵⁾

사회학자와 범죄학자는 삶속에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고난 등은 범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한다. Robert K. Merton(1938)은 Durkheim의 아노미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문화적인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구조적으로 차별화되어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 개인적인 목적 달성에 실패한 지속적인 긴장(chronic strain)은 분노나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Dollar, Dood, Miller, Mowrer, & Sears, 1939). 또한, Palmer(1960)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와 그의 형제들의 어린 시절을 비교한 결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신체적 결함, 낮은 학교 성적, 적은 친구 수, 만성적인 질병 등의 다양한 긴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Agnew의 일반 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으로 확장되어 가정, 학교, 직장, 이웃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경험 혹은 실망스러운 사건들도 긴장을 유발하는 범위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긴장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만성적인 형태로 되는데, 직장 내에서 발생한 표출적 폭력범죄는 가해자가 직장을 여러 번 옮긴 경험이 있거나 승진시험에 계속 떨어지거나 일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격분한 상태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충격을 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은 지속적인 실망감과 희망 없는

25) Jack & Eric, op. cit, pp. 1229-1232.

삶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직장을 위해 헌신한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로 여겨졌다는 생각 때문에 격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다.

이와 유사하게, 학교 내에서 충격을 가한 피의자도 지속적인 긴장(Chronic strain)을 경험하여 주변 친구나 교사들을 살해한다. 이들은 가정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경험하여 부모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된다. 또한 그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학업 실패와 주변 학생들에게 당하는 놀림, 모욕감 등을 경험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긴장(chronic strain) 자체는 무차별적 충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 학생 대부분은 이러한 긴장에 적응하거나 참고 견디면서 지낸다.

나. 통제할 수 없는 긴장(uncontrolled strain)²⁶⁾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긴장은 친사회적인 관계나 보호적인 관계를 통해 차단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을 지지해주는 집단과 결속되어 있다. 학업 실패로 인한 좌절감은 가족의 지지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의 조승희와 같은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규범적인 생활을 제약하는 주변통제도 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을 다니다 무차별적 충격을 가한 James Huberty의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다.

26) Jack & Eric, op. cit, pp. 1232-1235.

1984년, 41세인 James Huberty는 오하이오 주에서 용접공으로 일 하던 직장을 잃게 되었다. 그는 부인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잘 지내고 있었지만, 직장을 구하러 샌디에고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그 곳에서 보다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 그는 낯선 곳에서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들이 없었다. 해고된 지 일주일 후, 그는 동네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 반자동 소총으로 21명의 시민들을 살해하였다(Chester, 1993).

또 다른 예로, Harry De La Roche Jr.은 자신의 부모와 두 명의 여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South Carolina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학업 실패와 원만하지 못한 친구들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홀로 외롭게 몇 달을 지내다가 결국 그는 부모와 여동생들을 살해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다는 생각과 더불어, 부모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였다.²⁷⁾ 만약 그가 가까운 친구들이나 정신치료 상담사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Edmunds와 Kendrick(1980)는²⁸⁾, 반복되는 긴장은 적대감을 불러일 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태도가 형성된다고 한다. 무차별적 인 살인을 저지른 성인 피의자들은 본인이 겪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고, 주변인의 행동들에 대해 상당히 의심하는 즉 편집증의 경향도 보인다.²⁹⁾ 이러한 성격과 반복된 긴장으로 인해 더욱더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7) Fox & Levin, 2005; Jack & Eric. 2009, p. 1234.

28) Edmunds, G., & Kendrick, D. C. . The measurement of human aggressiveness. New York: Wiley, 1980.

29) Fox, J. A., & Levin, J., Multiple homicide: Patterns of serial and mass murder. Crime and Justice, 23, 1998, pp. 407-455.

다. 극심한 긴장(acute strain)

범죄자들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긴장과 고립감들은 직업을 잃거나, 사업 실패, 이혼 등이 무차별적인 총격 살인의 촉매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9년 Mark Barton은 하루 만에 수천달러의 손실을 입자,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총으로 살해하고, 관련 직업에 근무하는 9명의 직원들을 살해하였다³⁰⁾. 비슷한 예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 총격을 가한 피의자가 겪는 긴장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수치심, 이성친구와의 결별, 학업 실패, 따돌림, 혹은 갑작스런 질병 등이며 이러한 긴장은 범행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³¹⁾ 다수의 사례들에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누적된 긴장들은 촉매제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사건이 극심한 긴장의 계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라. 범행 계획 단계(the planning stage)

범행 계획 단계는 일련의 긴장단계에서 범죄자가 행동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범죄자들은 대개 극심한 긴장을 경험한 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되면 범행을 계획한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단계에 돌입하면 최소 2

30) Fox, J. A. & Levin, J., *Extreme killing: Understanding serial and mass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2005.

31) Jack & Eric, *op. cit.*, p. 1236.

일 동안 계획한다고 밝히고 있다.³²⁾ 범죄자들은 총으로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본인이 억압받고 상처받았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³³⁾ 결국 긴장과 같은 삶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

마. 무차별적 살해(massacre)

무차별 적 살해와 같은 경우 학교 내 총격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사례들은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activity theory)에 접목시킬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 즉 잠재적 범죄자, 감시의 부재, 적절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무차별적 총격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상(attractive target) 즉, 많은 학생들이 교실 내 혹은 학교에 존재하고, 총격을 제재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장된 직원의 부재(absence of guardianship, 감시의 부재), 그리고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려는 학생(pro prospective offender, 잠재적 범죄자)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적 총격을 저지른 조승희 사건이 이러한 요소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조승희는 8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중·고등학교 내내 내성적인 성격과 서툰 영어로 인해 주변

32) Vossekul, B., Fein, R., Reddy, M., Borum, R., & Modzeleski, W., The final report and findings of the safe school initiative: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Secret Serv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4.

33) Jack & Eric. 2009, p. 1236.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가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표적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학생들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를 괴롭혔던 학생들을 각기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여 총을 겨누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가장 근접한 버지니아 공대를 선택하였다. 근접성과 더불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총격을 행하기에 적합하였다. 조승희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괴롭혔던 학생들을 버지니아 공대 학생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였고, 무차별적 총격을 가했다.³⁴⁾ 즉, 조승희 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상을 선택하는데 있어 범죄자 자신의 긴장을 유발했던 원인과의 일정부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묻지마범죄가 동기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공격성 이론의 접근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들에 있어 그 원인을 심리학적 기준으로 접근하면 대부분 이상심리학에서 다루는 정신장애의 유형으로 분석과 진단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심리학은 독특하고 다양한 이상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유사한 특성에 의하여 분류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하여, 특정한 현상들을 집단화를 통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친다.³⁵⁾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묻지마범죄에 대하여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34) Jack & Eric, op. cit, pp. 1239-1240.

35)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12, 113면.

경우 상당수 정신장애와의 관련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를 갖는 비범죄자들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될 뿐 아니라, 정신장애 여부로 문지마범죄를 선별할 경우 범죄유형이 문지마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그럼에도 지금껏 문지마범죄는 적어도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장애 여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지마범죄에서 나타나는 폭력성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격성에 대한 접근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1939년 예일대학의 심리학자들은 공격성이 좌절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험결과를 통해 인간이 유사한 정도의 좌절과 분노에 대하여 개인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에 관심을 두었으나, 좌절의 정확한 개념과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후 Berkwitz(1962)를 통해 수정된 좌절-공격성 가설에서는 좌절로 인해 화가 났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정된 좌절-공격성 가설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안한다. ① 기대되는 목표를 얻는데 방해가 받는다, ② 좌절은 일반적인 분노의 결과이다, ③ 분노는 공격적 행동을 준비시킨다.³⁶⁾ 즉, 인간에게 있어 좌절로 인한 감정적 분노는 공격적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고, 고통스러운 대우, 보상의 지연, 개인적 욕망, 방해 등의 감정적 분노는 공격적 행위를 야기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³⁷⁾ 즉, 범죄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좌절과 같은 긴장의 연속은 공격적 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

36) Bartol Curt R. & Bartl Anne M., op. cit, pp. 116-117.

37)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3, 128면.

러한 행위들이 범죄로 발전할 경우 특히, 무차별적 공격행위로 표출될 경우 묻지마범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흥분전이이론(Excitation Transfer Theory)

Zillmann(1988)은 생리적 각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진다는 가정을 통해 흥분전이이론을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업무 중 화가 났던 사람이 저녁 늦게까지 각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는데, 시간이 지나서도 불쾌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과민반응을 보이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각성에 불쾌한 일이 더해지면서 분노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공격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³⁸⁾ 많은 사례에서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기까지 누적된 긴장들이 존재하지만 편한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흥분전이이론을 통하여 해석할 수도 있겠다.

3. 충동장애에 기인한 범죄행동

충동통제장애란, 여러 가지 종류의 충동이 조절되지 않은 채 부적응적 행동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IV)에서는 공격적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심각한 파괴행동으로 이어지는 행

38) Bartol Curt R. & Bartl Anne M., op. cit, pp. 118-119.

동을 ‘간헐적 폭발성 장애(Intermittent Explosive Disorder: IED)’로 설명하고 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다른 인격장애 또는 기관장애, 정신병, 약물중독의 원인이 아닌,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물건을 파괴하거나 심각한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공격 충동 통제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이에 DSM-IV에서의 간헐적 폭발성 장애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⁴⁰⁾

- ① 심각한 공격적 행위 또는 재산이나 기물을 파괴하는 공격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정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발생한다.
- ② 이러한 사건 동안 발생하는 공격성의 강도는 사건을 일으킨 계기가 되는 심리사회적 압박감에 비례하지 않는다. 공격적 행동은 대개 그 이전에 심리적인 긴장감이나 압박감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긴장감이나 압박감의 수준이 낮으면 공격적인 행동의 수준이 덜하고 긴장감이나 압박감의 수준이 높으면 공격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 ③ 이와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 사건이 다른 정신장애(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병적 장애, 조증, 품행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약물복용 또는 일반적

39) Blackburn, Ronald,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Theory, Research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2007, pp. 72-73.

40) 오윤성, 앞의 책, 180-181면.

의학적 상태(머리의 외상,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도한 경쟁과 긴장을 경험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는 묻지마범죄에서도 발견되는 사례이다.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계획적이고 은밀한 일반적 범죄와 달리 공공장소 또는 목격자를 의식하지 않고 벌어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묻지마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공통의 요소로 여겨지는 점은 분노표출에 의한 무차별적 공격 그리고 즉흥적으로 불특정인 다수를 향한 범죄라는 것이다.

제3장 문지마범죄의 현상과 특성

제1절 문지마범죄의 대표적 사례

문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이 특정사례를 문지마범죄로 보는 시각도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유영철 사건 등 연쇄살인범죄에 대하여 문지마범죄로 보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로 나뉘고, 조승희 사건도 다중살인과 증오범죄로 보는 견해가 다르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문지마범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특정 사례들로 그 현상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 국내의 문지마범죄 사례

가. 1982년 우범곤순경 총기 난사 사건⁴¹⁾

41)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한겨레뉴스, “28명 죽이고 초상집 문상, 부의금 3000원 낸 뒤 또 난사”, 2012-04-13일자.

1) 사건 개요

우범곤순경 총기 난사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에서 당시 순경이었던 우범곤이 저지른 총기 살인사건이다. 해병대 특등사수 출신이었던 우범곤(1955)은 1981년 4월부터 1982년 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인사 과정에서 탈락하여 1982년 3월 의령군으로 좌천되었고, 동거녀 전00(당시 25세)과의 사이가 몹시 좋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평소 술버릇이 나빴던 우범곤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범행 당일 무기를 탈취한 우 순경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공류지서 바로 옆 공류우체국이었다. 당시 우체국은 전화교환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4월26일 밤 10시경 공류우체국을 찾은 우 순경은 전화교환 업무를 하고 있던 전00(당시 21살·여)씨 등 2명의 교환원을 모두 사살하고, 숙직을 하던 집배원 전00(당시 36살)씨도 덩달아 총에 맞아 숨졌다.

외부와의 통신을 두절시킨 후, 공류면 내 4개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깃불이 켜진 집을 찾아다니며,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다. 자정이 지나자 우범곤은 총기 난사를 멈추고 평촌리 주민 서00의 집에 들어가 일가족 5명을 깨운 뒤, 4월 27일 새벽 5시경 수류탄 2발을 터뜨려 자폭했다. 이 사건으로 주민 62명이 사망, 3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당시 사건을 기록한 언론을 통해 종합해보면, 우범곤은 ‘특수근무처’(청와대)에서 근무하다 ‘주벽이 심하고 성격이 난폭하여’ 8개월 만에 의령경찰서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4급지에 속하는 공류지서로 좌천됐다. 사건의 주요 원인은 좌천에 따른 인사불만이라는 것이 당시 정

부가 꾸린 ‘사고원인조사반’의 결론이었다.

이 사건의 다른 원인은 범죄자의 난폭한 성격과 주벽 탓이었는데, 우순경은 1982년 초 전00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으나, 동거녀 집안에서는 평소 주사가 심한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겨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우순경이 궁류면 주민에게 방아쇠를 당기며 내뱉은 말은 ‘이 더러운 세상’ ‘순경 못해먹겠다’ 등이었다.⁴²⁾

또한, 위의 상황에서 보면, 우순경은 용의주도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든 사건이 끝난 뒤에 현장에 도착했다. 즉, 우발 또는 충동적 범행으로 보기에 예비단계에서의 계획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좌절과 사회적 불만의 표출이 범죄로 드러난 것이다. 범행당시는 우발적 범죄처럼 보이나 범행계획단계를 설명하는 누적된 긴장모델로 설명이 가능한 범죄적 특성을 보인다.

나.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⁴³⁾

1) 사건 개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의 중앙로역 구내에서 김00(50대)이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총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모두 태워버린 방화 및 살인사건이다.

김00은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 2개를 가지고 송현역에서 지하철 1호선의 제1079열차를 탄 뒤 경로석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중앙로역에 정차

42) 한겨레뉴스, “28명 죽이고 초상집 문상, 부의금 3000원 낸 뒤 또 난사”, 2012-04-13일자.

43)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휘발유가 든 페트병에 불을 붙였다. 열차는 중앙로역에 정차중이어서 승객들이 대부분 빠져나갔으나, 불길이 반대편 선로에서 진입하여 정차한 제1080열차로 옮겨 붙어 급속도로 번졌으며, 이 열차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규모는 192명(신원 미확인 6명)이 사망, 148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김00은 2001년 4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몸을 잘 쓰지 못하는 2급 지체장애인으로 "지병 치료를 받던 병원의 의사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병이 낫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세상에 앙갚음을 하고 싶어 불을 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판단착오로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좌절상황을 범죄형태로 표출한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았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승례문 방화 사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양 사건의 범죄자는 자신의 불만을 방화라는 범죄형태로 표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 범죄자는 개인적인 불만이 망상처럼 굳어졌고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해 사회와 불특정다수를 향해 표출한 범죄로 보일 수 있다.

다만, 승례문 방화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닌 건조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 선행연구들에서 묻지마범죄에 대한 공통요인 중 논란이 여지가 없었던 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있다. 즉, 승례문 방화사건의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사람이 아닌 점을 감안한다면, 묻지마범죄라기 보다는 개인의 분노표출형 방화범죄로 보는 것이 보다 적

절하다.

다. 2008년 논현동 고시원 사건

1) 사건 개요

논현동 고시원 살인사건은 2008년 10월 20일 오전 8시 15분 경 D고시원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던 정00(1978)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D고시원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연기를 피해 복도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 또는 중상을 입힌 살인사건이다.⁴⁴⁾

2) 범행 동기 및 특성

정00은 향토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누적된 상태였고, 밀린 휴대전화 요금도 60만 원 가량 되었으며, 고시원 월세 17만원도 내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또 앓고 있던 병인 하지정맥류 수술비 300만원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차였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와 불만과 분노를 사회를 향해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00은 경제적 압박을 받았으며, 그동안의 직장생활에서도 성실하지 못했던 것으로 주위는 평가했다. 일상생활은 주로 자신이 받은 월급은 거의 인형뽑기와 로또 구입에 탕진하는 등 절제하지 못한 생활을 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언행이 거칠어 친한 사람이 없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주로 외톨이로 은둔생활을 하였으며,

44)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명절에는 고향에도 가지 않는 등 가족관계도 소원했다. 중학교 때에는 자신의 신상을 비판해 자살을 시조하는 등 그동안 세 번의 자살시도도 있었다. 범인은 평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분노조절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⁴⁵⁾

다. 2012년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⁴⁶⁾

1) 사건 개요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은 2012년 8월 22일 저녁에 서울시 여의도에서 30대 남성 김00이 4명을 흉기로 상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저지른 김 00(당시 30세)는 전 직장동료들에게 앙심을 품고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저녁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전 직장동료 2명을 흉기로 찔렀다.

이후 일부 시민들이 제지하자 도주하던 도중 자신과 관련이 없던 또 다른 2명의 시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져 시민·경찰과 대치하는 중에 경찰의 테이저 건에 맞고 검거되었다. 경찰에 검거된 범인은 8월 24일 구속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전 직장동료 6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검찰 조사 결과 김00는 직장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판단,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

45) 이성식, 앞의 논문, 72-73면.

46)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서울경제, “여의도 흉기 난동 30대 징역 14년”, 2013-01-25일자; 뉴시스, “여의도 흉기난동 피의자 첫 공판…“심신미약 살인계획 없었다””, 2012-10-25일자.

사 김기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00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김00가 성장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있었고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우울증이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밤낮의 구별이 없는 등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면서 "범행 당시 이틀에 한 번 밥을 먹을 정도로 심신이 피폐했고 수면장애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좌절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좌절-공격성이론에서 설명하는 범죄유발 이유들이 설명된다. 그러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흥기를 준비하는 등 정신적 문제에서 발현된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

라. 2012년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⁴⁷⁾

1) 사건 개요

의정부역 흉기난동 사건은 2012년 8월 18일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유00(40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다. 유00는 이날 새로운 일자리와 장기 투숙할 잠자리를 구하려 서울 신설동 방면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전동차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47) 연합뉴스, "의정부역 흉기난동 피의자 "순간 격분했다", 2012년 8월 19일자; 연합뉴스, "문지마 범죄 개인만의 탓 아냐, 판사의 소감", 2013-02-06일자; 기호일보, "불우한 성장 환경... 참회록 2권 제출, 의정부역 흉기난동 피의자 선처 호소", 2012-12-06일자.

뺨는 과정에서 승객 A(18)군과 시비가 일었고 A군이 계속 쫓아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유00는 A군이 전동차 바깥까지 따라와 "왜 침을 뱉느냐"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일행 B(24·여)씨에게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유00가 자신의 팔목 등에 침을 뱉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00는 A군 일행을 공격한 뒤 승강장과 전동차 등에서 승객 6명에게 마구잡이로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가했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재판과정 중 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에서 조그만 밥을 일구며 정부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노모와 전신마비로 7년째 요양 중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막노동판을 전전했다"며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강조했다. 이어 "왜소한 체구의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마저 멸시와 폭행을 당한 탓에 그들에게 대항하려 커터칼을 지니고 다녔고, 일부러 보여 줬더니 괴롭힘이 덜 했다더라"며 "이 사건 외에는 어디에서도 커터칼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의 정신감정 결과 충동성향이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도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는 점 등이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충분히 사람이 숨길 수도 있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계획적 범죄로 수 있다.

마. 2012년 울산 슈퍼마켓 살인미수사건⁴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8월 21일 이00(27세)가 울산시 중구 자신의 집 인근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김00(53세)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는 사건이다. 이00는 사건 당일 밤 단골 슈퍼마켓에 평소처럼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여주인(53)에게 다가가 흉기로 배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했다. 놀란 여주인은 곧바로 남편과 함께 바로 앞에 세워둔 철제 가판대를 들고 이00가 재차 휘두르는 흉기를 막아냈다. 그런 뒤 이00를 밀어내며 밖으로 나가 슈퍼마켓 문을 닫고 이00가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사이 긴급출동한 경찰관 2명이 전기충격기로 저항하는 이00를 쫓아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 이00의 가방에는 식칼 1개, 커터 칼 7개, 망치, 드라이버, 마스크 등이 들어 있었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재판과정에서 이00는 사회적 고립과 굶주림 등으로 환청, 피해망상 등 지각장애, 사고장애, 분노감, 적대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00는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부터 거의 혼자서 방 2칸의 단독주택에 혼자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따로 살고 집을 나간 누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며, 자신도 언제부터 혼자 살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00의 방에는 TV 한대만 놓여 있고,

48) 연합뉴스, “울산 살인미수범 “같이 죽으려..느낌대로 했다””, 2012-08-23일자.

컴퓨터도 없었으며,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통화기능이 안 되는 상태였다. 친구도 없었고, 중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에 무직이었다. 이혼한 부모가 한번에 20만원씩 주는 용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00는 홀로 집안에 틀어박혀 살아온 은둔형 인간인 셈이었다. 담당경찰관은 혼자 살면서 불안,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이상해지다가 결국 각종 불만이 범죄로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00가 무직, 생활고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 불특정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어버릴 것을 결심하고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 국외의 묻지마범죄 사례

가. 일본의 아키하바라 살인 사건⁴⁹⁾

1) 사건 개요

아키하바라 살인사건(秋葉原通り魔事件)은 2008년 6월 8일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의 아키하바라에서 발생한 무차별 살인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8명이 사망, 10명이 부상했다.

2008년 6월 8일 12시 30분, 도쿄도 지요다구 소토칸다 지역의 교차로에서, 2톤 트럭 차량 한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하여 횡단보도를

49)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세계일보, “日, 80년대부터 '도리마' 공포 시달려”, 2012-08-23 일자.

건너고 있던 5명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그 뒤 이 트럭은 교차로를 지나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정차하였다.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다친 보행자에게로 접근하고 있던 행인과 경찰관 14명을 소지하고 있던 등산 나이프로 연달아 찔렀고, 사건 발생 5분 후, 만세이바시 경찰서 아키하바라 파출소로부터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를 추적해 경봉으로 대응한 뒤, 마지막에는 권총으로 남자를 제압하였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가토 도모히로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얼마 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에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키하바라에 왔다. 누구라도 좋았다”며 범행동기를 진술하였다.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보행자 천국(차 없는 거리)으로 도로가 통제되길 기다렸다가 통제된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산 나이프에 찔려 사망한 무토 마이는 근처 편의점 앞 휴대폰 가판 아르바이트 도중 사람들의 비명을 듣고 구하려고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의자는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무선인터넷 게시판에 약 1000회 정도 비정규직 관련 글이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으며 점차 살인을 예고하는 글로 바뀌면서 2008년 6월 8일 5시 21분에 “아키하바라에서 사람을 죽이겠습니다”는 타이틀로 “차로 돌진하고, 차로 안 되면 나이프를 사용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라고 적었고, 그 이후 범행 현장까지 이동하는 동안 30회 정도 댓글을 더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10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도리

마(通り魔)사건은 모두 74건에 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발한 2008년 한해에는 14건으로 정점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경제적 빈곤과 좌절이 야기하는 사회적 분노도 범죄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사건⁵⁰⁾

1) 사건 개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Virginia Tech massacre)은 2007년 4월 16일 오전 7시 15분 사이에서 9시 45분 사이(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Blacksburg)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에서 벌어진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이다. 교내의 웨스트 앰블러 존스톤 기숙사과 노리스 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으로 32명이 총상에 의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살인사건으로 언급되고 있다. 사건의 범인은 재미 한국인 조승희로, 그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였으며 8세 때 미국에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였다. 그는 사건 당시 버지니아 공대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4학년생으로 재적 중이었으며 사건 직후 난사 하던 총기로 자신의 얼굴을 쏘 자살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2009년 뉴욕에서 13명을 살해한 지벌리 왕

50)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노컷뉴스, “뉴욕 총기난사범, 방송국에 자필편지 보내 13명 살해한 지벌리 왕(41), “경찰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2009-04-07일자; 연합뉴스, “美사회 적응 못한 이민자의 극단 행동”, 2009-04-09일자.

(Jiverly Wong)의 사건이 있다. 1980년대 말 뉴욕으로 온 41세의 베트남계 이민자 왕은 영어 회화를 익히기 위해 'ESL(제2언어로서의 영어)' 수업을 들었던 이민자 센터에서 접수대 직원 및 자신이 공부했던 ESL 클래스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후 자살했다.

2) 범행 동기 및 특성

왕은 평소 부족한 영어 실력 때문에 직장 동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으며, 자신이 일하던 청소기 공장에서 해고된 뒤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한다. 결국 언어 장벽으로 인해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난 아시아계 이민자가 자신이 영어를 배웠던 이민자 센터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사건의 실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낮 동안 총기류로 무장하여 한 장소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것이다. 두 명 모두 범행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는 복수와 박해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둘의 확연한 차이점도 있었다. 우선, Wong이 범행 전 방송국으로 보낸 두 장의 메시지를 분석해 본 결과 정신이상(psychotic disorder)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더욱이 그의 아버지도 Wong이 20대 초반 무렵 정신이상 증후군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없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욕감과 상처를 받았고, 분노를 표출하였다. 무엇보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사회에 대한 시기보다 피해망상이 내포되어 있었다.

한편 조승희의 마지막 메시지에는, 사회에 대한 시기와 소외감 등 정신역동(psychodynamics)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왕과 다르게 조승희는 정신적인 망상이나 이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2005년 정신 건강

진단서에서도 그러한 증상은 없었다고 한다. 단지 그가 쓴 편지내용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사회적 박탈감과 소외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⁵¹⁾

제2절 문지마범죄의 개념 요소

문지마범죄의 개념 요소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지만, 범죄유형을 분류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의가 정리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나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문지마범죄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이 절에서는 문지마범죄의 개념 요소들을 경찰청의 과학수사계 범죄심리자문위원회의를 통하여 논의되었으며(2013년 10월), 구체적으로 학술적인 합의나 범죄통계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검거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문지마범죄의 개념 요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51) James L. Knoll, The "Pseudocommando" Mass Murderer: Part I, The Language of Reveng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010(38), pp. 296-270.

1. 피해자의 선택: 최소 1인 이상의 불특정 피해자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는 당사자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적어도 아는 사람인 경우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문지마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우선, 피해자를 선택함에 있어 일반적인 범죄들이 뚜렷한 목적 또는 목표물에 대한 동기가 있는 것과는 달리 범행당시 현장에 있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의 동기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선택되어 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다수의 연구들이 피해자의 불특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범행의 계획단계나 범행에 대한 동기가 발생한 당시에는 적어도 특정할만한 피해자가 존재 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범곤 순경 사건의 경우 자신의 처지와 조직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약혹자의 부모에 대한 분노가 함께 발산된 것이며, 울산 슈퍼마켓 사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주인부부가 가해자에게 어떠한 동기를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알고 지냈던 사이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의도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초 범행의 목적은 자신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전 직장이 동료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사건 당일 저녁 미리 준비한 흥기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공통적인 요소로 여기는 불특정한 다수의 피해자는 특정인이 포함된 피해자 중에 다수의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피해자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박순진(2004)은 적

어도 가해자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적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⁵²⁾

- ① 피해자는 범죄자와 공간적 근접성을 가진 사람
- ② 범죄자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하였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관중이나 관객
- ③ 범죄자의 억울한 사정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

따라서 측면에서 피해자는 적어도 범죄자에게 있어서 완전히 낯선 불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미 있는 타인’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다. 즉, 피해자의 불특정성이라기 보다는 ‘특정한 피해자를 포함하거나 다수의 불특정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한다는 특징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으며, 여기서 임의적 선택의 피해자는 범행당시 현장에 있는 다수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묻지마범죄의 피해자 선택의 요소는 최소 1인 이상의 불특정 피해자를 구성요소로 함이 타당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이 불특정인 대상의 범죄를 강조하면서 사례로 들었던 다수의 범죄는 연쇄 또는 대량살인인데, 이를 묻지마범죄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점이 바로 피해자의 다수성이라는 점이다. 즉,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묻지마범죄라고 인식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쇄 및 대량살인의 사례들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도 불특정인

52) 박순진, 전계 논문, 218면.

대상을 범죄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문지마범죄의 개념 요건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 다음에서 설명할 범행의 현장성을 근거로 할 때, 연쇄 및 대량살인은 문지마범죄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2. 범죄피해의 현장성

문지마범죄의 발생장소는 주로 길거리나 공원 등의 노상이거나 편의점, 학교 등의 공공장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은 연쇄살인범죄와 같이 범죄자의 아지트(Agit, 범행근거지 또는 은신처)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범행의 표출이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공개된 장소는 곧 범죄현장을 의미하는데, 범죄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로 피해자는 범행현장에 있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살인범죄의 범죄발생장소는 집안인 경우가 가장 많다. 강은영·박형민(2008)의 살인범죄에 대한 분석(1997~2006)에 따르면,⁵³⁾ 범죄발생장소에 따른 발생비율로 집안이 41~45%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가 노상(16~19% 수준),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유흥업소(8~1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문지마범죄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범행장소는 노상이거나 공공장소 또는 적어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범곤순경 사건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분노로 인한 범죄였지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거주지역의 노상이

53) 강은영·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준비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11면.

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여의도, 의정부역, 울산 슈퍼마켓 등의 사건들 역시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을 수치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대검찰청(2013)의 분석결과에서도 묻지마범죄 55건 중 28건(51%)가 길거리에서 발생했으며, 주로 길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칼이나 몽둥이로 공격했다고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도서관, 버스 안, 버스터미널, 시청 청사, 지하철 역,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가 9건으로 16%에 해당한다.⁵⁴⁾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다른 범죄에 비해 묻지마범죄로 여겨지는 사건들은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직접 목격할 가능성이 높거나,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범죄두려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묻지마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범죄자가 최대한 범행이 발각이나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일반적인 범죄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범행장소가 범죄자의 은신처이거나 적어도 적발의 위험성이 낮은 장소를 선택하는 반면, 묻지마범죄의 가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범행의 현장성을 다른 일반적인 범죄와 구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유사하게 비교되는 연쇄살인범죄와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다.

3. 범행의 비전형성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묻지마범죄는 범행수법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비전형적인 형태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묻지마범죄로 규정되

54) 대검찰청, 묻지마범죄 분석, 2013, 16면.

는 범행에는 특정할만한 유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개의 문지마범죄는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전제로 하는 범죄, 즉 살인, 폭행 및 상해 등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근 대검찰청(2013)과 서울지방경찰청(2012)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표본의 기준은 다르지만 대체로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검찰청의 분석에서 살펴보면, 문지마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죄명별로 살펴본 결과, 살인 18건(32%), 상해 29건(52%), 협박 5건(9%), 폭행 2건(3%), 방화 1건(2%), 손괴 1건(2%)로 나타났다. 이는 누군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무차별 흉기난동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살인, 상해 등 흉악범죄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⁵⁵⁾

이처럼 문지마범죄가 비전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공격적 행동을 가한다는 점을 공통된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방화나 손괴의 경우에서도 이를 수단으로 하는 문지마 형태의 범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방화나 손괴 등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편, 문지마범죄에서 주로 나타나는 대인범죄 외에도 방화나 손괴와 같은 대물범죄로 발현이 되는데, 자신의 분노를 대물범죄로 표출하는 범죄자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으며, 분노와 공격성을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힘든 경우에 대안적으로 물건이나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부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⁵⁶⁾

55) 대검찰청, 앞의 보고서, 10-11면.

즉,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대인범죄에 주로 발행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에서는 주도 등장하는 성범죄는 다수를 향해 동시에 저질러질 수 없다는 이유로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재물에 대한 위해 중 방화와 관련해서는 방화를 수단으로 하는 대인범죄, 즉 방화로 인한 치상·치사에 해당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묻지마범죄에 나타나는 특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는 사람이 범죄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범죄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Ferraro(1995)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위험해석모형(Risk Interpretation Model of Fear of Crime)”에서 범죄에 대한 인지적 두려움은 범죄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지인데, 실제로는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위협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 있는 것이다.⁵⁷⁾ 즉, 묻지마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재물손괴나 방화범죄에서 느끼는 위협보다는 이를 수단으로 하거나, 또는 직접적인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다만, 매체를 통해 알려진 정보에 의해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실제 상황에서 목격하거나 공개적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노출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지적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다수의 국민들은 묻지마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에는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⁸⁾ 또한, 다수의 연구들 또는 매체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범죄자의 전형적인 살인, 폭행 및 상해로 드

56) 박형민, 앞의 논문, 55면.

57) K. F. Ferraro, “Unraveling Fear of Crime Among Women,” in K. F. Ferraro, *Fear of Crime :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p. 100.

58)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www.dooit.co.kr)가 2012년 8월 23일부터 7일간 인터넷 및 모바일 앱 이용자 47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묻지마 범죄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그렇다'고 답했다.

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범죄에서 드러나는 범죄 행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한 일반의 다중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범행을 목격한 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은 보다 극대화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비전형적일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지마범죄의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어 전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개념정의가 되어 통계집계가 가능해지면 비전형적인 특성들에 대한 분류를 통해 범죄 유형을 특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분노표출에 의한 동기

일반적인 범죄에서의 동기와 문지마범죄 또는 이상동기범죄에서 동기가 뚜렷하게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기물파손의 경우 주취자나 청소년에 의해 특별한 이득이나 원한이 없이 가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이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이상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문지마범죄로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이다.⁵⁹⁾

지금까지 문지마범죄를 무동기범죄로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체포당시 피의자의 동기를 확인할 경우 ‘이유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상당수 가해자들은 범행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나 이유가 없었을 뿐, 범행을 준비 또는 계획을 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동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강력범죄자들이 갖는 전형적인 동기들과의 차이점

59) 정연대·이윤호, 앞의 논문, 220면

이 발견되었으며, 이들 요소는 주로 분노와 좌절에 의한 공격성 그리고 충동으로부터 발단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들은 미국 내 발생하는 무차별 총격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음에서 소개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문지마범죄와 매우 흡사하다. 미국의 random school shootings(무차별적 교내 총격: 1982-2001년에 발생)사건들을 분석한 Michael & Matthew(2003)의 연구⁶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Michael & Matthew(2003)의 연구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총격사건들을 분석하였다.⁶¹⁾ 보도된 사건들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하나의 주요한 패턴을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총격을 가한 남학생들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남학생들은 주변 학생들에게 남자답지 못하고 여성스러운, 즉 게이처럼 행동하여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험(gay-baited)이 있었다.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남학생과 다른 특징들(부끄러움, 소극적, 비활동적 등)을 지닌 학생들이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성역할, 특히 남성다움에 있어 다소 거리가 먼 행동과 성격들이 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⁶²⁾

예를 들면, Luke Woodham은 소극적이고 뚱뚱한 편이라, 주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놀림을 받았고, 게이나 동성애자로 취급받았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그를 뚱뚱하고 게으르다고 핀잔을 주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그는 등교 전 아침에 그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숨겨온 총을 학교로 가지고 와 2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60) Michael & Matthew, adolescent masculinity, homophobia and violence ; random school shootings, 1982-2001,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6, 2003, pp. 1439-1458.

61)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은 Time, Newsweek, U.S News and World Report, USA Today, The New York Times, the Los Angeles Times를 참고.

62) Michael & Matthew, op. cit, pp. 1439-1458.

입혔다. Woodham이 정신전문의와 상담한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냥 화가 났다... 나는 망가지지도 않았으며, 게으르지도 않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죽였다. 나는 불쾌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October 1, 1997, Pearl High School, Pearl, Mississippi. Luke Woodham, age, 16).”

또 다른 예로,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Dylan Klebold와 Eric Harris는 학교 내에서 동성애자로 소문이 났고 아무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학교 내에서 놀림감의 대상이었고, 괴롭힘을 당했다. 결국 그들은 학교에 총을 가져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그 결과 23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부상을 입었고, 교사 한 명과 학생 14명이 사망하였다(April 20, 1999, Columbine High School, Littleton, Colorado, Eric Harris, age 18, and Dylan Klebold, age 17).

이와 같은 사건들에 대하여 Michael & Matthew(2003)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내에서 발생한 28건의 학교 내 무차별적 총격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는 동성애자가 아니며, 단지 게이처럼 취급받는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피의자들은 자신이 사회문화적인 역할에서 정상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분노와 긴장 그리고 ‘진정한 남자(real man)’로 인식되고 싶은 생각에 총격을 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총격을 가한 학생들의 경우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껴 본인 스스로가 의지할 만한 친구들이 없으며, 교사나 부모들 또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잘 헤아려주지 않아 본인에 대한 믿음도 약해졌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과 교육 등 사회구조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⁶³⁾

미국의 총기사건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량살인자의 심리학적 특성으로는 오래된 좌절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한 낮은 자긍심, 우울과 사회적 고립감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량살인자는 어린 시절부터 각종 사고, 질환, 빈곤 등의 좌절을 경험했다. 또한 대량살인자는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졌거나 부모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소로 부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학업의 실패, 친구관계의 문제와 함께 그것이 지속될 경우 사회고립감과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⁶⁴⁾ 이러한 경험적 사례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묻지마범죄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혹은 일상화된 과잉분노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Buckley, Winkel & Leary(2004)의 실험연구에서도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하는 것이 분노를 야기하는데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회적 고립은 자신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한다고 인식될 때 극심한 분노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⁶⁵⁾ 보다 최근에 발생하는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분노의 표출인데, 여의도, 의정부역 사건 등에서 보듯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사회 내에서 자신만이 소외되고 자신의 현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좌절감이 증오나 절망으로 이어지면서 평소의 긴장보다 과잉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63) Michael & Matthew, op. cit, pp. 1449-1454.

64) Fox, J. A. and Levin, J., Multiple homicide: patterns of serial and mass murder. In M. Tony(ed), Crime and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lleher, M. 1997. Profiling the Lethal Employee.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8.

65) 윤정숙·김민지, 앞의 논문, 160면.

다수의 사례들이 일반범죄와 다르게 현실불만이나 절망 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일부 정신질환이나 약물남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범행의 내재적 원인이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장기적인 실업과 경제적 빈곤, 성장과정에서의 학대 등을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된다는 특징이 더해진다.

다만, 이러한 분노가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성과 충동에 대한 억제가 되지 않은 촉발적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발생한다는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도 범행현장에서 매우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4장 정책적 제언

제1절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화

1. 묻지마범죄의 개념요소 및 범위

묻지마범죄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기존의 주장들과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향후 묻지마범죄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이 모든 요소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묻지마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묻지마범죄가 아닌 연쇄살인 등의 경우에도 살인죄에 대한 죄명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와의 관계는 특정인이 최소 1인 이상이거나 다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 때 특정인의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범행장소와 관련하여서는 범의자가 공공장소 및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범위를 한정한다. 대검찰청의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의 집이나 여관 등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도 문지마범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문지마범죄는 범행의 현장성이 다른 범죄들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형이므로 범행당시 현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야기하는 범죄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범행장소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범죄통계 집계상 현실불만, 정신질환 및 쾌락추구를 위한 동기 등을 범위로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범죄자가 동기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동기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는 대부분 현실불만이 동기가 된 분노표출의 범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현실불만에는 정신질환의 범위는 범죄자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몇몇의 사례의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지마범죄도 발생한 것에 기인할 때,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현실불만의 동기와 함께 복합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지마범죄에 대하여 이상동기로 판단한 데에는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상식적인 이해를 벗어난 동기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할 경우 범죄자료 수집 시 ‘기타’의 항목으로 구분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유가 없는 우발적·충동적 범죄에서 나타나는 문지마 형태의 범죄들이 분풀이나 쾌락추구와 같은 동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성 및 충동에 의한 문지마범죄 유형에 있어 쾌락형 범죄유형을 포함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문지마범죄의 유형으로는 범죄자가 흥기 등 유형력 행사의 수단(폭행, 상해, 방화)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

행위로 특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강도 및 강간 등의 범죄는 금품이나 성욕 등 동기가 분명하고, 방화와 달리 손괴를 수단으로 사람에게 대한 위협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폭행 및 상해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묻지마범죄에 대상이 되는 형법상의 죄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살인의 죄(제250조 살인, 제254조 살인죄의 미수)
2.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 상해, 제258조 중상해, 제259조 상해치사, 제260조 폭행, 제261조 특수폭행, 제263조 폭행치사상)
3.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 현주건조문 등에 의한 방화 등 치상·치사, 제172조 폭발성물건과열 등 치상·치사, 가스·전기 등 방류 등 치상·치사)

이와 같은 개념 요소들은 어느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공통의 요인들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 묻지마범죄로 정의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향후 묻지마범죄의 통계집계 시 지금까지의 범죄원표에서 새로운 항목을 생산할 필요 없이 공통요인으로 조건검색이 가능하다면 통계집계가 이전 보다는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지마범죄의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문지마범죄에 대한 시민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매체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지마범죄가 개념적 정의가 없고, 유형화할 만큼의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범죄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프로파일링의 활용수준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찰은 범죄정보지원계에서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범인이 검거되어 면담이 진행된 후에만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발생 전 예방을 위한 분석 등 프로파일링 활용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지마범죄에 대한 사건 및 사례를 수집,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지마범죄 개념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범죄분석시스템의 입력 항목이나 통계산출의 접근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의 문지마범죄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증오범죄에 대해서는 연방에서 최초로 제정된 「증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에 따라 ‘살인, 치사, 강간, 폭력, 위협, 방화 그리고 재물의 손괴나 파괴 등의 범죄를 포함하는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및 민족색을 바탕으로 한 편견의 증거가 분명한 범죄’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자료 및 통계수집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Hate Crime Act) 각 주마다 증오범죄의 입법형태가 다양하여 표준적인 법적 개념은 없지만, 보호대상그룹,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 증오나 편견이 범죄로 동기화되는 요건, 가중처벌, 민사적 규제관련 조항, 통계자료수집 조항, 법집행

기관에 대한 교육요건의 규정을 두고 있다.⁶⁶⁾

이러한 범죄 자료수집 및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범죄통계수집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집계방식의 차이를 개선하는 방향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FBI의 표준범죄보고(UCR, Uniform Crime Report)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되는 범죄통계로써 UCR은 Summary Reporting System,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NIBRS), 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and Assaulted(LEOKA) Program, Hate Crime Statistics Program의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CR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위반행위 및 체포에 관한 데이터는 법집행기관, 즉 경찰기관이 Summary Reporting System 또는 NIBRS로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범죄통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은 물론 국가전체에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를 제공하여 범죄발생 및 발생범죄의 영향을 추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Summary Reporting System 또는 NIBRS와는 별도로 증오범죄통계(Hate Crime Statistics)를 FBI에 각각 보고하고 있는데, 1996년부터 UCR의 영구적인 통계수집 자료가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성별 및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도 포함하고 있다.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는 NIBRS의 일부로 추가의 별도 양식에 기록되는데, 대부분의 주(state)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를 보고하고 있다.⁶⁷⁾ 이는 무엇보다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법률로써 근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데이터구축이 일원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66) 이정주, 앞의 논문, 249, 257면.

67) FBI 형사사법정보서비스과(LERMS 법집행 기록 관리 시스템 매뉴얼), (<http://www.fbi.gov/about-us/cjis>)

이처럼 문지마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을 위해 우범자 관리체계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형사사법 기관들이 다루고 있는 범죄자 정보에 대한 일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즉, 문지마범죄의 개념정의에 대한 기관 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찰과 검찰이 집계하는 통계방식에도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문지마범죄에 대한 대응

1. 범죄경력자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지금까지 문지마범죄의 경우 평소 범죄자의 정신상태나 현실불만에서 발현되는 분노표출을 원인으로 볼 때, 다수의 사례들에서 일시적인 충동과 우발적 감정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법기관의 사전적 예방활동이 그 어떤 범죄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건의 과정을 원인론적 접근으로 해석해 보면, 이들이 범행 당시의 촉발요인, 즉 행인과 시비가 붙거나 신체적 접촉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다.

다수의 사례들에서 범죄자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우범곤 사건), 흥기를 평소 소지하거나(의정부역 사건), 계획된 시나리오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등(울산 슈퍼마켓 사건) 충분히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들 범행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력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묻지마범죄가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기회요소를 제거할 수 없어 예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계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억제장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잠재적 범죄자를 발견하거나,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에 대한 발견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재범억제를 위하여 범죄자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는 주로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이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주 내의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보호관찰부(Department of Probation) 또는 법원에서 담당하는 지역이 있다. 보호관찰관은 주기적으로 대상자와 면담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관계인과 접촉,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위험성을 판단하여 경찰에게 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재범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⁶⁸⁾

또한, 미국 워싱턴 DC의 경찰은 재범우려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CSOSA(Court Service & Offender Supervision Agency)에서 업무 협조를 받는다. 현재의 경찰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CSOSA는 연방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자를 관리하며, 타지역에서 보호관찰 관련 규정은 주(state)법에 규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은 전과자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갖추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⁶⁹⁾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2013)이 분석한 묻지마범죄자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의자 중 초범은 13명(24%)이고 전과가 있는 재범 이상은 42명으로 76%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경력자 관리에 대해서 형사사법시스템상 법원의 판단과 법무부 보호관찰을 통해

68) 경찰청, 미국의 우범자관리 실태자료, 2012.

69) 김상균, 앞의 논문, 116면.

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범죄경력자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다기관 협력 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범죄경력자 없는 우범자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면 평소 우범자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범죄경력자 관리를 경찰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범죄의 사전적 예방 전략의 실패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경력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범죄경력자 관리를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의 제공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사회적 고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문지마범죄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 다수의 범죄자들이 범죄경력자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이 형기집행 후 사회로 복귀하여 부적응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경력자는 아니지만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회적 고립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문지마범죄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지위의 박탈로 인해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누적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자들을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도

시생활, 낮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면 공격성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⁷⁰⁾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군 대상자를 사전에 변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들에 대한 관리체계에서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안정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정망을 위해서 다수의 연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이 관심이다. 대부분의 문제범죄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여되면서 극단적인 충동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회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자들에게는 장기간의 실업과 같은 경제적 좌절을 겪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거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이 잠재되어 있는 실업자, 미취업 청년층, 노숙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와 고용기회의 확대 그리고 고용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70) 박순진, 앞의 논문, 227면.

제5장 결론

이 연구는 지금까지 무동기,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 등 일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용어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지마범죄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 문지마범죄로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 특정 사례들에 근거하여 개념요소를 정리하였다.

우선, 무동기범죄나 이상동기범죄는 동기가 없거나 비상식적인 동기로 인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의 인과관계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특정 대상 범죄의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에 근거를 두었으나 사례들에서 특정한 피해자가 적어도 1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들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무차별범죄, 증오범죄의 경우 행위와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문지마범죄로 표현하기에는 해당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용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문지마범죄의 사례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요소를 구성하였다.

첫째, 피해자 관계는 특정인이 최소 1인 이상 포함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 때의 불특정한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다수인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범행장소는 공공장소, 노상, 다중이용시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한정한다.

셋째, 범행동기는 현실불만, 정신질환, 쾌락추구 등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격하기 위한 일반적인 동기가 아닌, 자신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표출형 동기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죄명의 유형은 범죄자가 흥기 등 유형력 행사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방화와 실화의 죄를 포함한다. 여기서 대물범죄에 해당하는 방화의 경우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대한 위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개념요소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범죄를 묻지마범죄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요소를 근거로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이 합의를 통해 공식적인 범죄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책마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합의된 정의에 따라 집계된 공식통계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묻지마범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2012)이나 대검찰청(2013)에서 수행한 분석에 있어서도 표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묻지마범죄에 대한 연구나 분석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묻지마범죄에 대한 개념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개념과 유형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형사사법기관에서 묻지마범죄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필요하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죄분석시스템의 입력 항목, 통계산출의 접근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지마범죄는 사건마다 원인과 양상이 다른 비전형적 범죄라는 특성에 따라 단기간 내 예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매 사건마다 경찰청이 임시적이거나 대책들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범죄 예방과 차별적인 예방대책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전과자 위주의 우범자 관리체계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자들에게 항시 경찰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지마범죄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관련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지마범죄의 개념에 대한 합의와 이를 통한 통계산정에 대한 기준마련, 그리고 범죄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집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문지마범죄에 대한 실태, 범행에 대한 원인, 범죄유형에 대한 다양한 분석적 접근이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문지마범죄의 특성상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미 알려진 범죄학이론들을 한국적 상황에 맞는 척도와 분석방법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덕지, “무동기범죄 심층해부”, 수사연구 4월호, 2006.
- 강은영·박형민,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준비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 경찰청, 미국의 우범죄관리 실태자료, 2012.
- 고선영,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2012.
-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12.
- 김상균,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세미나, 2012.
- 김준호, “묻지마 범죄 대책 길게보자, Weekly 공감, 2013.
- 김현철, “소위 묻지마 범죄의 효율적 분석과 대책에 대한 실무 연구”, 형사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9호, 2012.
- 대검찰청 형사1과-3602(2012. 02. 28),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 지시’
- 대검찰청, 묻지마범죄 분석, 2013.
- 박형민,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 공안행정학회 추계세미나 발표자료, 2012.
-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박영사, 2013..

- 이성식, “무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2010.
- 이정주, “증오범죄의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 한양법학 제24권 제2집, 2013.
- 최규범, “국내 사건사례를 통해 보는 무동기범죄의 분석과 수사”, 수사연구 제24권, 2010.

2. 국외 문헌

- Bartol Curt R. & Bartol Anne M., Criminal Behavior(9th, Hardcover) A Psychosocial Approach, Prentice Hall, 2010.
- Blackburn, Ronald,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Theory, Research Practice, John Wiley & Sons Inc, 2007.
- Charalambous, Nick, and Meryl Dillman. "No evidence of spree killer yet, police say". The Anderson Independent-Mail (Anderson, South Carolina), December 17, 2006.
- Douglas, John E., Burgess, Ann W., Allen G. Burgess, & Robert K. Ressler. Crime Classification Manual(2th). Jossey-bass, 2006.
- Edmunds, G., & Kendrick, D. C., The measurement of human aggressiveness. New York: Wiley, 1980.
- Ferraro, K. F., “Unraveling Fear of Crime Among Women,” in K. F. Ferraro, Fear of Crime :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 Albany, 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5.
- Fox, J. A. & Levin, J., Extreme killing: Understanding serial and mass murder. Thousand Oaks, CA: Sage, 2005.
- _____, Multiple homicide: patterns of serial and mass murder. In M. Tony(ed), Crime and Jus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elleher, M. 1997. Profiling the Lethal Employee.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1998.
- _____, "Mass Muder: An Analysis of Extreme Violence," Journal of Applied Psychoanalytic Studies 5, 2003.
- _____, Multiple homicide: Patterns of serial and mass murder. Crime and Justice, 23, 1998.
- Hamm, M. S., American Skinheads: The Criminology and Control of Hate Crime. New York, Praeger Press, 1993.
- James L. Knoll, The "Pseudocommando" Mass Murderer: Part I, The Language of Reveng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2010.
- Joel Best.,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Levin, J. and Eric Madfis, Mass Murder at School and Cumulative Strai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52: 9, 2009.
- McLaughlin, Eugene & Muncie, John (EDT), The Sage Dictionary of Crimin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6.

Michael & Mattew, adolescent masculinity, homophobia and violence ; random school shootings, 1982-2001,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6, 2003.

Vossekuil, B., Fein, R., Reddy, M., Borum, R., & Modzeleski, W., The final report and findings of the safe school initiative: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S Secret Service and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05.

3. 기타

기호일보, “불우한 성장 환경… 참회록 2권 제출, 의정부역 흉기난동 피의자 선처 호소”, 2012-12-06일자.

노컷뉴스, “뉴욕 총기난사범, 방송국에 자필편지 보내13명 살해한 지벌리 왕(41), "경찰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 2009-04-07일자

뉴시스, “여의도 흉기난동 피의자 첫 공판…"심신미약 살인계획 없었다””, 2012-10-25일자.

서울경제, “여의도 흉기 난동 30대 징역 14년”, 2013-01-25일자

세계일보, “日, 80년대부터 '도리마' 공포 시달려”, 2012-08-23 일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2 정책토크, 시민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2012.

연합뉴스, “묻지마 범죄 개인만의 탓 아냐, 판사의 소감”, 2013-02-06 일자

_____, “美사회 적응 못한 이민자의 극단 행동”, 2009-04-09일자.

_____, “울산 살인미수범 "같이 죽으려..느낌대로 했다”,
2012-08-23일자.

_____, “의정부역 흥기난동 피의자 "순간 격분했다”, 2012년 8월 19
일자

한겨레뉴스, “28명 죽이고 초상집 문상, 부의금 3000원 낸 뒤 또 난사”,
2012-04-13일자.

FBI 형사사법정보서비스과, <http://www.fbi.gov/about-us/cjis>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http://www.independentmail.com/news/2006/dec/17/no-evidence-spree-killer-yet-police-say/>

책임연구보고서 2013-12

묻지마범죄의 개념화에 관한 연구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